

08-2-113792
주 의 사 항

1. 국가기술자격증을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주소의 취업증인 사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대여하거나 이종 취업을 하게 되면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4. 국가기술자격이 취소·정지된 자는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자격번호 08204120084L

성명 서동진

자격종목 1250

토목기사

생년월일 1982. 12. 05

주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662번지

합격연월일 2008 년 12 월 15 일

교부연월일 2008 년 12 월 24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정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원본대조필